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년 2월 1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4일 삼척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 2. 11)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총무과장 홍성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해 오던 정원의 증원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 지방공무원 총수는 946명(본청 379, 직속기관 100, 출장소 30, 사업소 72, 읍면동 365)으로 함.  
○ 본청, 소속기관,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 총수중 15명은 '96. 12. 31까지, 37명은 '99. 12. 31까지 한시 정원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원표)

- 삼척시 지방공무원 총수 946명은 내무부 승인 정원에 따라 정하였으며,
- 시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 부칙 제3조에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 규정으로 통합시 과잉 인력정원의 존속기간은 '99. 12. 31일과 '96. 12. 31 까지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